

審 查 報 告 書

2001. 3. 28
總務委員會

1. 審 查 經 過

- 가. 提出日字 : 2001. 3. 14
- 나. 提出者 : 신준범의원외 7인
- 다. 回附日字 : 2001. 3. 17
- 라. 上程日字 : 2001. 3. 28

2. 提案說明要旨(提案說明 : 慎俊範 議員)

가. 改正理由

-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15조의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취약지역의 주민에 대한 보건의료를 행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,
- 일부 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을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자함.

나. 主要骨子

- 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을 일부조정(안 제10조제3항 “별표2”)
 - 강당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중 “마룡리”를 창리보건진료소 관할구역으로 조정

3. 專門委員 檢討意見

- 본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은(읍·면지역) 의료취약지역의 주민에 대한 보건의료를 행하게 하기위하여 보건진료소를 설치·운영하도록 되었음.
- 같은법시행령 제14조가 정한 보건진료원의 업무의 범위는
 - 상병상태를 판별하기 위한 진찰·검사행위
 - 외상등 흔히 볼수 있는 환자의 치료 및 응급을 요하는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
 - 만성병 환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
 - 예방접종
 - 질병예방에 관한업무 및 기타 주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업무등 이며,
- 이는 보건진료소의 역할이 해당 주민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관할구역의 중요성은 심대하다 하겠음.
따라서 강당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중 “마룡리”를 취락구조 및 지리상 교통이용 면에서 편리한 창리보건진료소로 조정함은 타당하며 특히 그렇게 조정된다 하여도 관할구역 인구는 강당보건진료소 1,773명 창리보건진료소 1,360명으로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의 보건진료소의 설치기준인 관할구역 인구 500인이상 5천인미만에 해당되어 본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검토결과 적법하며 원안대로 개정하여도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主要質疑 및 答辯要旨 : 생략

5. 討論 및 少數意見 : 없었음

6. 審査結果 : 원안대로 가결

의안번호	제 195 호
의결 년 월 일	2001. . . (제 회)

서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발 의 자	신준범 의원외 7인
발의년월일	2001. 3 . 14.

서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95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01. 3. 14.

발 의 자 : 신준범 의원외 7인

1. 개정이유

-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 취약 지역의 주민에 대한 보건의료를 행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음.
- 일부 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을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을 일부조정(안 제10조제3항 “별표2”)
 - 강당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중 “마룡리”를 창리보건진료소 관할구역으로 조정

3. 참고사항

-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15조
- 서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

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[별표2]의 강당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란중 “마룡리”를 삭제하고 창리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란에 “마룡리”를 신설한다.

부 칙

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

개 정 안

[별표2]

[별표2]

보건진료소의 명칭 · 위치 및 관할구역

보건진료소의 명칭 · 위치 및 관할구역

(제10조 제3항 관련)

(제10조 제3항 관련)

명 칭	위 치	관 할 구 역
.....
.....
강당보건진료소	(생 략)	지산리, 칠전리 강당리, 마룡리
창리보건진료소	(생 략)	창리, 간월도리 <u><신설></u>
.....
.....

명 칭	위 치	관 할 구 역
.....
.....
강당보건진료소	(현행과같음)	지산리, 칠전리 강당리, <u><삭제></u>
창리보건진료소	(현행과같음)	창리, 간월도리 <u>마룡리</u>
.....
.....